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

제안연월일 : 2026. 9.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328	안상훈	2026.4.14.	2026.9.11.
	2218353	박용갑	2026.4.15.	2026.9.11.
	2219846	남인순	2026.7.8.	2026.9.11.

나.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9. 16.)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9. 17.)는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위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권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그 절차로 인해 신속한 보호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위기상황 등에 놓인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한 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급여 관리가 어려운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복지지원만으로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급여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하기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우대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제23조의2 등).

한편, 주거급여의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안 제11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임차료”를 “임차료, 관리비”로 한다.

제2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까지와 제5항”을 “제4항까지와 제6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7조의4 및 제3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① 보장기관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해당 수급자의 급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관리자의 지정·변경 및 해제, 권한·업무 범위,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인사상 우대 조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수급권자의 발굴, 지원 및 자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23조의2제6항”을 “제23조의2제7항”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 한 <u>임차료</u> , 수선유지비, 그 밖 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주거급여) ① ----- ----- -- <u>임차료, 관리비</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u> <u>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u> <u>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u> <u>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u> <u>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u> <u>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직권 신</u> <u>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u> <u>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u> <u>1.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u> <u>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u> <u>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u> <u>있는 경우</u>

<신 설>

③ ~ ⑤ (생 략)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

④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⑤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⑨ 제5항-----

-----.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제21조제5항-----

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illegible]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

⑤ 제4항-----

-----.

-----.

⑥ -----제4항-----

-----.

⑦ -----제4항-----

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

⑧ -----제4항까지와 제6항-----

-----.

제27조의4(의사무능력자의 급여 관리) ① 보장기관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해당 수급자의 급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관리자의 지정·변경 및 해제, 권한·업무 범위,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인사상 우대 조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u>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u> <u>수급권자의 발굴, 지원 및 자활</u> <u>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거나 우</u> <u>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u> <u>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u> <u>그 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u> <u>을 지급할 수 있다.</u>
--	--